

## 교환교수에 관한 규정

제정 2018. 10. 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간의 교환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교환교수”라 함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이 국제학술 교류 등을 위하여 강의 및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상호기관에 파견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 (파견기간) 교환교수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에서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교환교수 선정) ① 본 대학교에서 외국대학에 파견하는 교환교수는 교수연구년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외국대학에서 본 대학교에 파견되는 교환교수는 해당 학과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총장에게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5조 (교환교수의 수) 교환교수의 수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교류 외국대학별로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6조 (보수 등) ① 본 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교환교수의 보수는 교수연구년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② 본 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교환교수는 외국대학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외국대학에서 본 대학교에 파견되는 교환교수의 보수는 외국대학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체제조건 및 여비) ① 본 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교환교수의 현지 숙식 및 기타 체제비, 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에서 본 대학교에 파견되는 교환교수의 숙식 및 기타 체제비, 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귀국보고) 교환교수로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교수는 교수연구년제 규정 제9조에 따라 연구년결과보고서 및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대학 교환교수의 관리) ① 외국대학 교환교수가 본 대학교에 체류 기간 동안의 관리는 해당교수가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학과에서 담당한다.

② 해당학과에서는 담당교수를 정하여 교환교수의 학술활동에 협조하도록 한다.

③ 외국대학 교환교수는 파견기간 종료와 동시에 면직한다.

제9조 (연구년 교수 이외의 해외파견) ① 국가기관의 지원에 의한 경우,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에 의한 경우, 교원이 개인적으로 외국대학으로부터 초청받은 경우 등 연구년 이외의 사유로 해외파견을 희망하는 교수는 해당 학과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총장에게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연구년 이외의 사유로 인한 해외파견 교수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 날부터 시행한다.